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88 발의연월일: 2024. 10. 7.

발 의 자:조승래·김병기·윤종군

윤호중 • 이정문 • 홍기원

노종면 • 박상혁 • 이기헌

박홍배 • 박용갑 • 장철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금융당국·수사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. 2020년 82.6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 악용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불과 2년만인 2022년에 199.6억원으로 2.4배 증가하는 등 그 피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임.

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 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 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

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,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 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파목 및 같은 조제2호 마목 신설 등).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"금융회사"란"을 ""금융회사등"이란"으로 하고, 같은 호 파목을 하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의2 중 "금융회사가"를 "금융회사등이"로, "금융회사의"를 "금융회사등의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자금이 송금·이체된 계좌"를 "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송금·이체·이전된 계좌(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이체된 금전"을 "이체·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(이하 "금전등"이라 한다)"으로, "금전"을 각각 "금전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금융회사가"를 "금융회사등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"금융회사와"를 "금융회사등과"로 한다.

- 파. 「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상자산사 업자
- 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

가상자산(이하 "가상자산"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을 매도, 매수, 교환, 이전, 보관 또는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

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회사나"를 "금융회사등이나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금융회사가"를 "금융회사등이"로 한다.

제2조의4의 제목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항제2호 중 "금융회사와"를 "금융회사등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한다.

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한다.

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"금융회사는"을 각각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송금·이체한"을 "송금·이체·이전한"으로, "금융회사"를 각각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회사"를

"금융회사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, "금융회사의"를 "금융회사등의"로, "송금·이체된"을 "송금·이체·이전된"으로, "금융회사에"를 "금융회사등에"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송금·이체한"을 "송금·이체·이전한"으로,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융회사등"으로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, "금융회사에"를 "금융회사등에"로 한다.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 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융회사"를 각각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융회사에게"를 "금융회사등 에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금융회사에"를 "금융회사등에"로,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
제12조 중 "금융회사로부터"를 "금융회사등으로부터"로 한다.

제13조의2제2항 본문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융회사는"을 "금융회사등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금융회사"를 "금융회사등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3, 제3호부터 제7호까지,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금융회사"를 각각 "금융회사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기통신금	제1조(목적)
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	
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<u>금융</u>	<u>구 &</u> <u>ㅁ &</u>
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	회사등
정하고,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	
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	
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	
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	
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	
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	
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	
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	
다.	<u>.</u>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<u>"금융회사"란</u> 다음 각 목의	1. <u>"금융회사등"이란</u>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	
말한다.	
가. ~ 타. (생 략)	가. ~ 타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파. 「가상자산이용자 보호
	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	<u>가상자산사업자</u>
<u>파.</u> (생 략)	<u>하.</u> (현행 파목과 같음)

2. "전기통신금융사기"란 「전 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(欺罔)·공갈(恐喝)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자금 또는 재산상의이익을 취하게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, 대출인 제공·알선·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 <신 설>

2의2. "전자금융거래"란 <u>금융회</u> 2 <u>사가</u>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 고, 이용자가 <u>금융회사의</u> 종 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

2
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<u>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</u>
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
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
<u>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</u>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
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 "가상자산"이라 한다. 이
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 "가상자산"이라 한다. 이하 같다)을 매도, 매수, 교
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 "가상자산"이라 한다. 이 하 같다)을 매도, 매수, 교환, 이전, 보관 또는 관리
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 "가상자산"이라 한다. 이 하 같다)을 매도, 매수, 교환, 이전, 보관 또는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
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 "가상자산"이라 한다. 이 하 같다)을 매도, 매수, 교 환, 이전, 보관 또는 관리 하도록 하는 행위 2의2금융회
마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 "가상자산"이라 한다. 이 하 같다)을 매도, 매수, 교 환, 이전, 보관 또는 관리 하도록 하는 행위 2의2금융회

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 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.

- 3. (생략)
- 4. "사기이용계좌"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·이체된 계좌,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 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 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.
- 5. "피해금"이란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· 이체된 금전, 피해자가 교부 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 에서 출금된 <u>금전</u>을 말한다.
- 6. "피해환급금"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 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

3.	. (현행과 같음)
4.	
	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송금ㆍ
	이체ㆍ이전된 계좌(가상자산
	거래를 위한 계정을 포함한
	다. 이하 같다)
5.	·
U,	•
	<u>이체·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</u>
	자산(이하 "금전등"이라 한
	<u>다)금전</u>
	<u> </u>
	<u>금전등</u>
6.	

금융회사가	피해자에게	지급
하는 금전을	말한다.	

- 7. "이용자"란 <u>금융회사와</u> 체결 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2조의2(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 전한 대응 등) ① (생 략)
 -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 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 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·요구 또 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 - 1. <u>금융회사</u>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·경고·견책(譴責) 또는 감봉
 - 2. <u>금융회사가</u>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 인력,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 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

<u>금융회사등이</u>
 7 <u>금융회사등과</u>
제2조의2(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
한 대응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
<u>금융회</u>
사등이나
1. <u>금융회사등</u>
 2. <u>금융회사등이</u>

한 사항

③ • ④ (생 략)

제2조의4(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) ① 금융회사는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 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 인하는 조치(이하 "본인확인조 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다 만,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 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 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해당 <u>금융회사</u>에 대출을 신 청하는 경우
- 2.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·적금·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
-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4(<u>금융회사등</u> 의 피해 방
지 책임 등) ① <u>금융회사등은</u> -
1 <u>금융회사등</u>
2금융회사등과
② 금융회사등은

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 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.

제2조의5(이용자계좌에 대한 임 시조치)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,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 시 정지하는 조치(이하 "임시 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1.•2. (생 략)

-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 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<u>금융회사는</u>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 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
-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

 제2조의5(이용자계좌에 대한 임 시조치) ① <u>금융회사등은</u>
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<u>금융회사등은</u>
<u> </u>

·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, 녹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2조의6(금융거래의 목적 확인)

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. 이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<u>금융회사는</u>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 런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 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 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

제2조의6(금융거래의 목적 확인)
① 금융회사등은
<u>금</u> 융회사등은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금융회사등은
③ 금융회사등은

역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.

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좌의 이체·송금·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3조(피해구제의 신청 등) ① 제 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 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 금을 송금·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<u>금융회사</u>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

④ <u>금융회사등은</u>
 제3조(피해구제의 신청 등) ① -
<u>송금·이체·이전한</u> <u>금융회사등</u>
그 6 원 기 ㄷ
- <u>금융회사등</u>
②
<u>금융회사등</u>

-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 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<u>금융회사</u> 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 지의 요청을 받은 <u>금융회사는</u> 다른 <u>금융회사의</u> 사기이용계좌 로 피해금이 <u>송금·이체된</u> 경 우 해당 <u>금융회사에</u> 대하여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 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4조(지급정지) ① <u>금융회사는</u> 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

<u>.</u>	
3	
	<u>금융회사</u>
<u> 등</u>	
4	
	- <u>금융회사등</u>
<u>은</u> 금융회사등	<u>-)</u>
	- <u>송금·이체</u>
<u>·이전된</u>	· <u>금융회사</u>
<u>· 이전된</u> 등에	
<u>등에</u>	
<u>등에</u>	
<u>등에</u> ⑤ (현행과 같음)	

여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,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<u>금융회사</u>에 통지된 피해자
- 4. 피해금을 <u>송금·이체한</u> 계좌 를 관리하는 금융회사
- 5. 6. (생략)
- ③ <u>금융회사는</u> 제1항제1호 또 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

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금융회사등은
금융회사등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<u>금융회사등</u>
4 <u>송금·이체·이전한</u>
금융회사등
5. • 6. (현행과 같음)
③ 금융회사등은

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④ (생략)

제5조(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)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 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 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(이 하 "채권소멸절차"라 한다)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 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채 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제3 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

1. ~ 5. (생략)

요청하여야 한다.

6.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

· 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)
① 금융회사등은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
하인 경우. 다만,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 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<u>금융</u>
 <u>회사</u>, 점포 및 예금 등의 종
 별 및 계좌번호
- 3. ~ 8. (생략)
- ③ (생 략)

제6조(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저 피해구제)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

<u>금</u> 융회사 <u>등</u>
②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
<u></u> 회사등
3. ~ 8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세6조(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
피해구제) ①
<u>금융회사등</u>

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.
- ③ <u>금융회사는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 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 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④ (생략)
-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 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 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 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 기계기)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

②
<u>금융회사등</u>
<u>에</u>
③ 금융회사등은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⑤ 금융회사등
제7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
제7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

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,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(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8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 ① 금 용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 른 지급정지·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

<u>금융회사</u>
<u> 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금융회사등은
<u>금융회사등</u>
<u>에</u>
③ (현행과 같음)
세8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 ① <u>금</u>
<u>융회사등</u>

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② <u>금융회사는</u>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.
- 1. · 2. (생략)
-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채권의 소멸) ① (생 략)

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,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
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<u>금융회사등은</u>
·.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 금융회사등
금융회사등 <u></u> -
제9조(채권의 소멸) ① (현행과
같음)
②
<u>금</u> 융회사등에

한다. 다만,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원 및 해당 <u>금융회사</u>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 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0조(피해환급금의 결정·지급)
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
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
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
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
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
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
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
통지하여야 하고, 통지를 받은
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
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
한다.

- ② (생 략)
-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12조(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)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

	금융회사등
제	· 1. ~ 3. (현행과 같음) 10조(피해환급금의 결정·지급) ①
	그 6 원 기 ㄷ
	<u>금융회사등</u> <u>에</u>
	<u>금융회사등은</u>
	② (현행과 같음) ③
	<u> 금융회사등</u>
제	· ④ (현행과 같음) 12조(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)
''	

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.

- 제13조의2(사기이용계좌의 명의 7 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) ① (생 략)
 -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 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 -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 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 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 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

<u> 사등으로부터</u>
제13조의2(사기이용계좌의 명의
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)
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 금융회사등</u>
③ 금융회사등은
,
4

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<u>금</u> <u>융회사</u>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

제15조(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)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 독원은 제3조제4항, 제4조제2항, 제5조제1항·제2항,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7조제2항, 제8조제3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·제3항,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·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.

- ② (생 략)
- ③ 금융회사 및 「전자금융거 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 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·제33조 및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

<u>명회사등</u>
제15조(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
특례) ① <u>금융회사등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금융회사등

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. 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18조(과태료)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을 제출 · 이행하지 아니 한 금융회사 ---금융회사등 2.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금융회사등 2의2.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 2의2. -----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 · 해 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 을 서면,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-----금융회사등 2의3.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 2의3. -----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-----금융회사등 3.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 -----금융회 사 사등 4.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

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	
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	
지 아니한 <u>금융회사</u>	<u>금융회사등</u>
5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	5
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	
하지 아니한 <u>금융회사</u>	<u>금</u> 융회사등
6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	6
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	
하지 아니한 <u>금융회사</u>	<u>금</u> 융회사등
7.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	7
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<u>금융</u>	
<u>회사</u>	회사등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	1
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글	
<u>융회사</u>	<u>융회사등</u>
2.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	2
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	
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	
지하지 아니한 <u>금융회사</u>	금융회사 <u>등</u>
3.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	3
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	
톳지하지 아니하 금융회사	

③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